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 「아동수당법」, 「인구전략기본법」, 「지역필수의료법」, 「국립의전원법」 등
국정과제 법안 22개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 2026년 5월 7일(목) 기준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통과된 국정과제 법안 중 주요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아동수당법」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환자기본법」 제정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의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 원을 추가지급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동수당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만 원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각종 권리를 명문화하여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환자가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 (보도참고자료)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3. 1.) 참고
- ※ (보도참고자료)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2026. 4. 23.) 참고
- ※ (보도참고자료) "'진료 대상을 넘어 정책 주체로" 환자가 직접 여는 「환자기본법」 시대'(2026. 3. 31.) 참고

2. 인구전략 개편: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대통령 중심의 인구구조 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 ※ (보도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 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2026. 5. 7.) 참고

3.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첫 보험료 지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여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다.

- ※ (보도참고자료)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2026. 4. 23.) 참고
- ※ (보도참고자료)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된다.(2025. 11. 27.) 참고

4.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의사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의사법」·을 제정하여 별도 지역·필수의료 인력이 전문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체계 및 재원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력의 의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법」 또한 개정하였다.

- ※ (보도참고자료)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2026. 2. 12.) 참고
- ※ (보도참고자료)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2025. 12. 2.) 참고
- ※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 4. 23.) 참고

5. 공공의료 및 의료 안전성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의료법」 개정(비대면진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개정하여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수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 (보도참고자료)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본회의 통과’(2026. 4. 23.) 참고
- ※ (보도참고자료)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2026. 1. 29.) 참고
- ※ (보도참고자료)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2. 2.) 참고

6.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향상: 「자살예방법」 개정(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였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하였다.

- ※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0. 26.) 참고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개정된 법률이 법률안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법안을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오성일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044-202-2271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연령 확대(기존 8세 미만→개정 13세 미만,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 지원 확대(매월 2만원 이내) ▶ 인구소멸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 지급 	2026. 3. 27. 시행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마련 	2026. 4. 23. 본회의 통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
3	「환자기본법」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환자가 그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관리체계 규정을 포함하고 부칙에서 「환자안전법」 폐지 	2026. 4. 28. 공포, 2027. 4.29. 시행
4	「인구전략기본법」 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명칭) 인구전략 기본법 ▶ (목적) ‘저출생,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인구정책 기본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시행,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추진,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포용적인 가족정책 수립,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모자 보건의 증진,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경제적 부담의 경감, ‘고령사회 시책 수립, ‘세대 간 통합 증진,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제고,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노후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노후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 교육과 정보화 지원, ‘노후설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인구의 국가간 이동 지원, ‘인구교육 활성화 	2026. 5. 7. 본회의 통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p>▶ (위원회 등) 명칭인구전략위원회(인구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위원장 대통령, 규모 40인 이내(위원장·부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비서실 인구전략 업무, 사회정책 업무 보좌 수석 비서관 각 1명,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대표(시·도 또는 시·군·구), 간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사무기구 설치, 인구정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인구정책 책임관 지정</p> <p>▶ (예산 관련) 주체인구전략위원회,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 권한 예산 투자 방향·우선 순위를 관계부처와 사전협의→기획처에 의견 제출(기획처는 위원회 의견 존중), 정보전산망 구축·운영 가능</p> <p>▶ (중장기 계획) 명칭인구전략기본계획, 수립주체위원회, 협의대상 관계부처·지자체, 수립주기 5년, 포함 필요 사항·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이전 기본계획 분석·평가, `장래인구구조 변동 예측 및 경제·사회적 영향, `사회·경제구조 개혁 정책 추진과제, `적응정책 추진과제, `결혼·임신·출산·양육 환경조성 추진과제,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추진과제, 국내 인구유입 및 인구교육 관련 추진과제, `기간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투자방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확정절차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p> <p>▶ (조사·분석·평가) 주체위원회, 대상 인구정책, 주기매년, 내용조사·분석·평가, 후속조치·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해야 함, `위원회는 평가 등의 결과 추진실적 미흡 또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조정 및 예산 조정 권고 가능,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 전문조사·연구기관 설치 또는 관련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p>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p>2026. 6. 17. 시행</p> <p>2026. 4. 23. 본회의 통과, 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p>
6	<p>「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p> <p>제정안 ※ 예산처 공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로 안정적·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 규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필수医료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진료권)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 - (자체충족률) 필수医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진료권 내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 ▲ (재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집중적·안정적 지역필수의료 분야 투자를 견인하고, 분산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효과 제고 ▲ (국가와 지자체 책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당면의 필수의료 과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 ▲ (거버넌스) 중앙과 시·도의 필수의료위원회 신설로 지역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고하고, 실태조사,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 지역별 필수의료 사업 추진 및 시행 지원,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조정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진료협력체계) 「공공보건법」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및 성과평가에 기반한 재정 지원, 수가 가산 등 필수의료 보상 체계 수립 ▲ (지역필수의사 지원 등) 복지부장관이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 확보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책에는 의무복무형 지역 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관련 지원 사항 모두 포함 ▲ (그 밖의 지원책) 필수의료 기반시설 확충, 취약지 지원 강화,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관련 규정들도 포함 </div>	<p>2026. 3. 10. 공포, 2027. 3. 11. 시행</p>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7	<p align="center">「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함 ▶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의 지원,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p align="center">2026. 2. 24. 시행</p>
8	<p align="center">「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국가 지원, ‘형사 특례 및 사전 심의절차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등 	<p align="center">2026. 4. 23.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p>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등 규정	2026. 4. 23.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공동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의 컨트롤 타워로 육성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026. 5. 7.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 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지자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 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규정에 유사하게 조치 ▶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 을 위한 요양급여와 비용(공공정책수가, 공공정책급여) 지급 근거 마련	2026. 4. 23. 본회의 통과, 2027. 1. 1. 시행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를 명시하고,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함	2025. 11. 11. 공포, 2026. 5. 2. 시행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지역 간 업무조정을 위한 업무조정 위원회 설치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판매업자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 * 2촌 이내 친족, 법인 지분 50% 초과 출연 또는 소유한 자 등 「약사법」 제47조제7항의 특수관계 거래 금지 조항 준용 ▶ 의료기기 판매업자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미 보고 또는 거짓 보고시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025. 12. 30. 공포, 2027. 12. 31. 시행
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세포처리 시설 업무범위에 수입 추가 	2026. 4. 23.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 ▶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 신설 	2026. 4. 23.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
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경부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건강검진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근거 마련 	2026. 2. 19. 공포, 2027. 3. 1. 시행